

공 고

●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4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26.

울산전파관리소장

전파법령위반 무선국(정기검사불응) 행정처분 통지내역

- 근거법령: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
- 법령위반사항: 정기검사불응
- 처분내역: 무선국 허가취소
- 처분일자: 2026. 1. 13.
- 송달대상 및 내역

번호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시설자주소	비고
1	41-2000-20-0000004	1201세진호	이○국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	

6. 참고사항

-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)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,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, ☎052-231-8935, Fax 052-231-89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